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
일부개정법률안  
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523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 의 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

합진규 · 정태옥 · 한선교

경대수 · 박찬우 · 성일종

강효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35조제2항에서 “「공유수면관리법」에 의한 공유수면 점·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”로 규정되어 있으나, 「공유수면관리법」은 2010년에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정과 동시에 폐지 되었음.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따라서 “「공유수면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35조제2항).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
일부개정법률안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35조제2항 중 “「공유수면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5조(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) ① (생 략)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개발부담금, 「농지법」에 의한 농지조성비, 「초지법」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, 「<u>공유수면관리법</u>」에 의한 공유수면 점·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35조(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<u>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</u>」 -----.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